

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허법 [시행 2024. 8. 7] [법률 제20200호, 2024. 2. 6, 타법개정]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허법 [시행 2024. 8. 21] [법률 제20322호, 2024. 2. 20, 일부개정]</p>
<p>제128조(손해배상청구권 등) ① ~ ⑦ (생략)</p>	<p>제128조(손해배상청구권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<b>3배</b>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</p>	<p>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<b>5배</b>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</p>
<p>⑨ (생략)</p>	<p>⑨ (현행과 같음)</p>